

##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2. 23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2. 2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2. 29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로과장 전영표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에서는 부천시재해대책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

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,

-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(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- 99. 1. 27)에 의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.(안 제5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 심사시와 동일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- "붙임 참조"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297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3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기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에 의거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됨에 따라 부천시도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의 예치를 현재의 시금고보다 안전하고 이자

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운용코자 하고

-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고 하나 막연히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보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여 이자수익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적립기금의 이자율을 최대한 더 높이고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금을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하고자 일부 개정

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제2항 중 “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” 를 “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시장 은 기금을 <u>시금고에 예치·관리</u>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<u>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</u> 한다.	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시장 은 기금을 <u>안전하고 이자수익 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</u> 하되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<u>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</u> 하여 관리·운용한다.	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②시장 은 기금을 <u>안전하고 이자수익 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</u> 하되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<u>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</u> 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97호
의결년월일	2000. 3. 3 (제77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1항에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예치토록 한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에서는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기금을 예치할 경우 시금고보다 높은 이자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의 증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,
-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(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- 99. 1. 27)에 의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의 기금을 부천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·관리 - 조성된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.(안 제5조제2항)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제2항 중 “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”를 “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”로 하고 “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.”를 “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